

영등포구의회
제191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5. 10. 19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83호로 2015년 10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
발의되어 2015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민선6기 구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쟁력 있는 조직기반 마련을
위해 주요 시책 기구를 신설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등 행정환경
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·운영하기 위해 정원
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3조(정원채정기준)제2항의 별표 2에서

(1) 연구직공무원(연구사) 비율 : 100% 이상 → 0%

나. 조례 제4조(직급별 정원)의 별표 3에서

(1) 일반직공무원 5급 : 61명 → 62명 (증 1명)

(2) 연구직(기록연구사) 6급 : 1명 → 0명 (감 1명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, 제36조

나. 예산 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- 일반직공무원 5급과 기록 연구사 6급의 인건비 차액 8,255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5급 29호봉(직원5급 평균호봉)		6급 27호봉(직원6급 평균호봉)	
본 봉	4,335,991원×12월	52,032	3,716,961원×12월	44,604
정근수당	52,032천원/12×0.96	4,163	44,604천원/12×0.96	3,569
정근수당가산금	130,000원×12개월	1,560	130,000원×12월	1,560
관리업무수당 (초과근무수당)	52,032천원×9%	4,683	10,331원×67시간× 12월×86.57%	7,191
정액급식비	130,000원×12월	1,560	130,000원×12월	1,560
명절휴가비	52,032천원/12×120%	5,204	44,604천원/12×120%	4,461
연가보상비	52,032천원/12/30 ×0.86×10일	1,243	44,604천원/12/30 ×0.86×10일	1,066
직급보조비	250천원×12월	3,000	155,000원×12월	1,860
성과상여금	52,032천원/12×110%	4,770	44,604천원/12×110%	4,089
합계		78,215		69,960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난 안전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과 기록물 관리·보존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 인력을 현황에 맞게 임기제 정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.
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원 총수는 1,30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, 신설부서(가칭 ‘도시안전과’)에 5급 일반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기록물 관리·보존 관리부서(기획예산과)의 연구사 정원을 1명 감축하는 내용임.
- 국민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실행 중심의 재난안전 조직체계 구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“기준인건비제”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
- 2014년 3월 개정된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, 행정자치부가 영등포구에 제시한 2015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액은 총 1,099억 원이고, 영등포구 인건비 편성액은 총 1,047억 원(기준인건비의 95%수준)으로써 추가적인 인건비 소요 예상액이 8백만 원임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른 인력조정 이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기준 인건비 내에서 별다른 재정적인 문제없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.

【붙임1 ‘2015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 현황 참조】

【 불 임 】

2015년도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 현황

□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: 109,901,888천원

□ 영등포구 예산편성금액 : 104,776,509천원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
총 계	104,776,509
101 인건비	83,684,662
101-01 보수	67,248,727
101-02 기타직보수	4,038,942
101-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	12,396,993
204 직무수행경비	2,321,776
204-02 직급보조비	2,321,776
303 포상금	3,822,089
303-02 성과상여금	3,822,089
304 연금부담금등	14,947,982
304-01 연금부담금	12,674,328
304-02 국민건강보험금	2,273,654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4조(기준인건비제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,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(이하 "자율범위"라 한다)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,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과 자율범위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36조(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.